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미 상무부 첨단반도체 원격접근 규칙과 국내 데이터센터의 대응

2026.11.26

기획분석

미 상무부 첨단반도체 원격접근 규칙과 국내 데이터센터의 대응

- 국내 데이터센터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

미중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반도체의 원격 이용이 주요 수출통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해 동남아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칩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고객에게 원격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은 수출통제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회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의 기업이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첨단 칩을 수입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센터의 연산자원을 중국 기업이 이용하는 방식은 그동안 수출통제의 회색지대였습니다.

11월 1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첨단반도체에 대한 원격접근 대응」 잠정최종규칙(IFR)을 공개했습니다. BIS는 이번 규칙을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작성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첨단 반도체 수출기업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은 첨단 칩을 공급하기 전에 수입업체의 신원과 최종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등 우려 국가뿐 아니라 중국 등으로의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국가나 제재기업(이하 '규제대상')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수입된 첨단 반도체의 재판매·임대와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외국 수입업체와 데이터센터는 BIS의 승인 없이 첨단 칩을 규제대상에 재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중국·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이 원격으로 접속해 군사적 목적이나 대규모 AI 모델 학습 등에 연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새롭게 칩 수출허가가 필요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는 소재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내 데이터센터도 해외 고객의 지배구조와 연산자원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중국·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처리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해당 데이터센터에게 첨단 칩을 공급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첨단 칩을 수입하고자 하는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데이터센터 이용 고객에 대한 실사(KYC: Know Your Customer) 체계를 갖추고 수출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 연산자원을 이들 기업에게 새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센터가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기준을 초과해 연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시행 후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시행되며, 의견 제출 기한은 게재 후 60일입니다.

1. 규칙 개요

이번 잠정최종규칙(IFR)은 크게 네 가지 제도 변화로 구성됩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인 최종용도 통제입니다.

데이터센터 최종용도 통제 신설(§ 744.24): 중국·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연산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첨단 칩을 공급하려면, 칩 수출기업은 데이터센터의 소재 국가와 관계없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회수출 위험국 허가요건 신설(§ 742.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에 첨단 칩을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만 월별 보고를 조건으로 허가를 면제받습니다.

파운드리·OSAT* 대상 추정 강화: 중국 및 위 5개국과 연관된 설계업체의 칩은 제조·패키징 단계에서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해소하기 어려워집니다.

AI 확산규칙 공식 폐지: 국가 등급(tier) 구분, 데이터센터의 검증된 최종사용자 면허(VEU), 모델 가중치 통제 등을 폐지하고, 개별 고객에 대한 실사를 중심으로 통제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통제 대상은 첨단 AI 칩(ECCN** 3A090), 이를 탑재한 서버(4A090), 관련 '.z 품목'***과 소프트웨어·기술입니다. 연산자원 규모는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칩의 TPP****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준인 총 TPP 1,200만은 H100·H200(칩당 약 15,800) 약 760개, B200(약 36,000) 약 330개에 해당합니다. 중견 규모 GPU 클라우드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 용어 설명]

* OSAT: 반도체 후공정 외주 기업(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 ECCN: 수출통제 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 .z 품목: 첨단 칩을 탑재했지만 암호화 기능 등으로 다른 ECCN에 분류되는 서버·장비
**** TPP: 총처리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2. 국내 데이터센터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한국은 우호국 그룹(국가그룹 A:5)에 속해 국내 반입 자체에 새롭게 허가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요건은 국내 데이터센터에도 적용됩니다. 앞의 두 가지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머지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연산자원 제공 시 허가: 중국·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 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칩을 공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국 고객이 중국 기업을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간접 제공의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허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는 고객 실사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여 수출기업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존 거래의 90일 유예: 이미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업체가 시행 후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 실사와 연산자원 규모 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후 용도변경: 비중국계 고객에게 배정했던 연산자원을 이후 규제대상 중국계 고객에게 제공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국내에서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운영업체가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첨단 칩 공급업체는 이러한 의무의 내용을 수입기업에 통지해야 하므로 향후 공급계약이나 납품 서류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록도 EAR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합산: 네트워크로 연결돼 연산자원을 공유하는 국내외 데이터센터는 TPP를 합산합니다. 디지털 연결도 포함되므로 데이터센터를 여러 곳으로 나눠 규제 기준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한국 자회사나, 중국계 고객이 전체 연산자원의 50%를 초과해 사용하는 주된 이용자라면 기존 § 744.23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TPP가 1,200만 미만이더라도 별도의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고객 실사(KYC): 첨단반도체 공급업체의 정보 요구 확대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고객 실사입니다. IFR에 따라 첨단 칩 공급업체는 자신이 공급한 첨단 칩의 최종 용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해외 데이터센터에 충분한 고객확인(KYC)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칩 제조사, 서버 제조사(OEM), 유통사가 국내 데이터센터에 다음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객의 최종 모회사 및 지분구조에 대한 실사 내역
- 중국·마카오 관련 고객에게 제공하는 연산자원 규모
- 위 정보에 관한 진술·보장 및 변동 사항 통지 의무

데이터센터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출통제의 위험신호(red flag)로 간주됩니다. 공급업체가 위험신호를 해소하지 못하면 최종 용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고객 실사 체계가 미흡한 데이터센터는 GPU 조달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 범위는 중국·마카오 관련 기업의 직접·간접 소유와 지배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법인, 중국계 지분이 있는 국내 기업, 제3국의 중국계 법인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상품·콘텐츠 추천에만 사용하는 '상업용 추천시스템'은 BIS에 보고하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기능이 포함되면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사례: 중국계 지분이 있는 싱가포르 고객 기업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그 모회사나 주요 주주가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법인의 소재지가 싱가포르라는 사실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 지배주주라면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국 거주 중국인 개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개인은 문언상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사 조항은 개인을 포함한 '사람'의 소유·지배 관계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므로 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지만 실제 경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면 본사 소재지가 중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자라도 중국 밖에 거주한다면 국적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국적보다 소재지와 본사입니다.

판단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중국 기업이 주요 주주이지만 지배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금지 조항은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실사 조항은 '직접·간접 소유 또는 지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준의 관계와 구체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분율, 이사 선임권,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위험신호로 관리해야 합니다.

5. 해외 거점과 장비 이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건설할 예정인 국내 사업자가 수입한 첨단반도체를 이들 국가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직접 BI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면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사업 일정에 반영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에는 허가 관련 위험을 분담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BIS는 규제 회피를 용인하는 국가에 수입 제한, 추가 허가요건 부과, 제재 대상 목록(Entity List) 등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장관이 대상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기술이 적용된 첨단 칩을 탑재한 서버는 해외에서 조립했더라도 BIS 관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후 장비를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도 EAR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6. 불명확한 쟁점과 의견 제출

잠정최종규칙은 발효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규칙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입니다. 주요 쟁점은 △총 TPP 1,200만의 산정 범위(센터 전체 용량 또는 중국계 고객 제공분)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범위(멀티리전 연동 및 재해복구용 복제 포함 여부) △고객 실사의 구체적인 수준 △추천시스템 예외의 인정 절차입니다. 지배권 없는 중국계 주주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업계 단체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상 어려움을 제시하면 최종규칙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단계별 대응 과제

미국의 수출통제는 '칩을 어디로 보내는가'에서 '칩의 연산능력을 누가 사용하는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이제 수출통제의 중요한 관문이 됐습니다.

즉시 착수할 일: 중국계 고객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별 최종 모회사와 지분구조를 확인하고, 배정된 GPU의 총 TPP를 산정합니다. 90일 유예 대상이면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60일 의견수렴 기간 내 의견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3~6개월 안에 갖출 것: 신규 고객 실사 절차와 위험신호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 계약에 진술·보장 및 지분 변동 통지 의무를 반영하고, 칩·서버 공급계약의 KYC 관련 조항도 검토합니다. GPU 재배정 전 심사와 기록 보존 체계를 구축하되, 발효일부터 적용되는 의무는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것: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사업 계획에 허가 일정과 규제 대상국의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BIS에 대한 자진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BIS도 이번 규칙에서 자진신고를 권고했습니다.

How We Can Help: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지원 분야

- 규제 영향 진단: § 744.23 및 § 744.24 적용 여부와 90일 유예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허가 신청·자진신고 대응: BIS 허가 신청과 규제 위반 시 자진신고를 지원합니다.
- 실사·계약 정비: 고객 실사(KYC) 절차를 설계하고 고객 및 공급계약의 수출통제 조항을 정비합니다.
- 의견서 작성: 개별 기업 또는 업계 단체 명의의 BIS 제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11월 16일 공개된 BIS 잠정최종규칙(RIN 0694-AK50)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

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1

中, 영업비밀 침해 외국기업 제재 추진…美 지재권 제재에 "맞불"

상무부 특별규정 초안 공개…무역·투자·입국 제한 가능, 11월 24일까지 의견수렴

중국 상무부가 자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 기업에게 무역·투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상무부는 10월 26일 「중국 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초안은 일반적인 영업비밀 보호 규정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 기업·조직·개인이 국제 경제·무역 활동에서 중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그 행위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해치거나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에 △중국 관련 상품·기술·서비스 거래 제한 또는 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의 입국 금지 및 취업·체류 자격 취소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확보한 사실을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개인은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과 거래하려는 중국 기업은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한 외국 기업은 제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월 19일 「미국 지식재산 보호법(PAIPA)」에 근거해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음 날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제 로펌들은 이번 초안을 미국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PAIPA를 본뜬 중국판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 위협'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영업비밀'을 판단할 때 보유 기업의 국적이 기준인지,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도 포함되는지, 중국 밖

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도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초안은 10월 16일 공개된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수출 목록 개정안이 AI·바이오·태양광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한다면, 이번 초안은 이미 해외로 이전된 중국 기술의 무단 사용을 제재하는 장치입니다.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공동개발·라이선스·합작 사업을 해 온 기업은 기술 분쟁이 소송을 넘어 무역·투자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 출신 인력을 채용할 때는 전 직장의 자료가 무단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중국 협력사 역시 거래에 필요한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술 계약의 권리 귀속과 자료 사용 범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2

산업부, 기술유출 특사경 추진…기업의 기술보호 규제 강화

해외법인 매각·철수 및 우회 M&A 심사 확대, 행정·형사·민사상 제재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6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107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가 40건(37.4%)을 차지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해외투자, 구조조정, M&A, 인력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관련 입법도 진행 중입니다. 9월 11일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월 29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1월 20일 기준 세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부 역시 국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허성무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부 소속 4~9급 관련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합니다. 수사 대상은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입니다. 피해기업은 신속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은 기술이전·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사전 심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술수출 승인·신고 이후 해외시설을 매각·양도·폐쇄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와 해외시설을 통한 기술 매각·사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권 취득과 기술 출자·양도·사용을 수반하는 합작법인 설립도 심사 대상이며, 해당 외국인에게도 승인·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관한 신청 통지부터 결과 통지까지는 관련 기술수출과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거래가 제한됩니다.

기업은 거래 초기부터 심사 대상 여부와 투자자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에 정부 승인 조건과 거래 지연 위험 분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에게 기술유출·침해행위의 중지·금지 및 원상회복 명령 권한을 부여합니다. 불이행 시 하루 최대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술수출·해외 M&A 심사 위반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해당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해외사업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은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까지 가중처벌 요건을 확대합니다. 미수·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법인에 개인 벌금형의 최대 3배를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신설합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혼합재산까지 몰수 범위를 확대합니다.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취득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발비 전액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기술별 R&D 비용과 증빙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을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조치명령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핵심인력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 퇴직자의 기술자료 접근권한 회수, 자료 반출 기록 관리, 신규 채용자의 전 직장 자료 무단 반입 방지, 협력사 보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연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전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 경과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표]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 개정 전후 비교

2026년 11월 20일 기준 | 개정안 통과·시행 가정(현행 의무와 구분)

구분	개정 이전(현행)	개정 이후(발의안 기준)	기업의 대응 포인트
수사 주체	산업부는 정책·행정 담당	산업부 특사경 도입. 기술유출·전략물자 범죄 수사	수출통제 및 수사 대응체계 점검
기술 판정·시설 매각	판정 중 거래 제한 및 시설 매각·철수 심사 근거 미비	판정 중 거래 제한. 해외시설 매각·철수 등 심사	기술 판정 및 구조조정 일정 검토
외국인 투자·M&A·합작	해외 M&A 승인·신고. 우회 인수 규제 불명확	외국인 지배권 취득·기술출자 합작 심사. 외국인 승인·신고 의무	실질 지배구조 확인, 정부 승인 조건 반영
행정제재	기존 형사제재 중심. 유출 중단 수단 부족	교육명령 불이행 시 최대 3년 거래 제한. 중지명령 등 불이행 시 하루 최대 1,000만 원	심사 절차 준수, 행정명령 대응체계 마련
손해배상	손해액 입증 부담.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배상	기술개발·취득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근거 마련	기술별 R&D 비용·증빙 관리
형사처벌·환수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 20억 원	85억 원으로 상향. 미수·예비·음모 및 법인 처벌, 몰수 확대	임직원·법인의 형사 위험 점검
협력사·인력	실태조사·개선권고 및 계약 중심 관리	협력사 실태조사·조치명령. 이직 확인·인센티브 검토	협력사 보안 및 채용·퇴직 절차 점검

주: 발의안은 미확정 상태이며 인력 이탈 방지 등 정부 검토 과제는 확정된 신규 의무가 아닙니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7., 10.19.), 국회 의안 제2221320호·제2222254호·제2222255호, 언론보도

통상산업정책센터 (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한 법률 리스크 검토를 넘어,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통상·산업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전략 컨설팅 조직입니다. 경제안보·수출통제·관세 등 각국 규제의 영향을 정책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투자 구조·공급망 재편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역할입니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국·EU·중국 3대 권역의 규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합니다.

관련구성원

김세진
외국변호사

02-316-7270
sejinkim@shinkim.com

고한석
고문

02-316-7288
hsko@shinkim.com

최병천
전문위원

02-316-7278
bchchoi@shinkim.com

이용우
대표변호사

02-316-4007
ywlee@shinkim.com

유정열
고문

02-316-4740
jyyu@shinkim.com

장경수
변호사

02-316-4066
kschang@shinkim.com

윤강현
고문

02-316-4322
khyun@shinkim.com

이상현
변호사

02-316-4068
shlee@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02-316-4212
hpak@shinkim.com

02-316-2862
yhoon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